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75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이상희 · 배준영 · 박충권
엄태영 · 최수진 · 고동진
김태규 · 김승수 · 김성원
김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법상 공소취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일부 고위공직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압력 등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고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재기소가 제한되므로, 일단 공소가 취소되면 유·무죄를 다룰 기회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부정 사건은 국민의 공직 신뢰와 직결되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 아울러 그 가족은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직무 관련 비리에 연루될 여지가 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이 수사·기소 대상을

이들에 한정된 것 역시 같은 인식에 기초함.

이에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에 의한 재판 중단을 막고 검사가 증거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제3항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55條(公訴의 取消) ① · ② (생 략) <u><신 설></u>	第255條(公訴의 取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를 취소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 성년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